

청 소 년 보 호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매하도록 권유·유인·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등을 구매하게 한 자를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사람과 동일한 수준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913호, 2018. 12. 11. 공포, 2018. 12. 11.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여성가족부령 제 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28조제5항”을 각각 “법 제28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 의 작성 · 통보) ① 여성가족부 장관은 <u>법 제28조제5항</u> 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 약물 목록표와 별지 제10호서식 의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 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 다.	제8조(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 의 작성 · 통보) ① ----- ----- <u>법 제28조제6항</u> ----- ----- ----- ----- ----- ----- -.
② <u>법 제28조제5항</u> 에 따라 여성 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 등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u>법 제28조제6항</u>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청소년보호환경과	
연 락 처	02-2100-6292